

프랑스 ABS 조례(한국어): 이익공유에 관한 표준 계약 2017.9.13

국내에서 채취된 생물유전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표준 계약(환경에 관한 법률 제 R. 412-20조에서 언급)을 규정하는 2017년 9월 13일 법령

2017. 9. 29

프랑스 관보

8/154

법령, 명령, 공문  
본문

생태적 전환부(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y transition)

국내에서 채취된 생물유전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표준 계약(환경에 관한 법률 제 R. 412-20조에서 언급)을 규정하는 2017년 9월 13일 법령

NOR : TREL1704128A

1992년 5월 22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하고 1992년 6월 13일 프랑스에서 조인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두 가지 부록도 포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협약 (한 가지 부록 포함)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르는 공정한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채택하고 2011년 9월 20일 프랑스에서 조인됨)에 따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14년 4월 16일 채택한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 사용자의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사용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 내용 준수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제 511/2014호에 따라,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3조~제 L. 412-20조와 제 R. 412-18조~제 R. 412-27조 및 제 L. 640-5조~제 L. 644-1조에 따라,

국무장관과 생태적 전환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을 공포한다.

제1조-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8조 적용을 위해 그리고 동 법률 제 R. 412-20조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채취된 유전자원의 사용에 따른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은 본 법령 부록에 명시된 표준 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2조- 수자원 및 생물다양성 부장은 본 법령의 이행을 담당한다. 본 법령은 프랑스 관보에 게재된다.

2017년 9월 13일 작성

국무장관

수자원 및 생물다양성부

F. 미토(F. MITTEAULT)

#### 부록

국내에서 채취된 유전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공유에 관한 표준 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와 같은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다.

한 쪽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환경부 장관이 대표하는 정부

[혹은 과들루프 지방의회/레위니옹 지방의회/마르티니크 지방정부/기아나 지방정부/마요트 도의회 (이들 지역의 의회가 제 L. 412-8조가 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XXX는 ..... 를 법적으로 대표하고 직위는 .....

이며, 본사 주소는 ..... 와 같다. 차후 “사용자”라고 지칭한다

이들 전체 혹은 각각을 “당사자들” 혹은 “당사자”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1992년 5월 22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하고 1992년 6월 13일 프랑스에서 조인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두 가지 부록도 포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3조~제 L. 412-20조와 제 R. 412-18조~제 R. 412-27조에 따라,..... 측이 제시하는 유전자원 사용 요청에 따라,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8조~제 L. 412-21조 제 VII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시행된 조정절차에 따른 합의(날짜 : ..... )에 따라,..... 행정재판소가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합의 결정 제 ..... 호에 따라,]

#### 제 1조 계약 대상

본 계약은 국가 [혹은 과들루프 지방의회/레위니옹 지방의회/마르티니크 지방

정부/기아나 지방정부/마요트 도의회 (이들 지역의 의회가 제 L. 412-8조가 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가 합당한 방식으로 사전에 전달한 동의내용을 문서로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사용하고자 하는 유전자원 : .....

사용 목적 : .....

본 계약서에는 동의가 이루어진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사용 조건과 유전자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공유 조건을 명시한다.

본 계약서의 등록번호 : .....

## 제2조 유전자원 사용 조건

### 제3조 유전자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공유의 조건

유전자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들은 아래 열거한 계획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

이익공유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환경에 관한 법률 제 L. 412-4조 제 3항 a~f 호가 명시하는 활동 범주에 속해야 한다.

- a)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지 내 또는 현지 외 생물다양성의 보존 혹은 개발
- b)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소중히 여겨야 할 다양한 전통적 관행이나 노하우 보존
- c)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거나 유전자원 혹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가능케 하는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부문의 개발에 기여하는 활동 (이 모든 활동은 해당 유전자원의 보존에 기여하는 국가와의 연계 하에 이루어져야 함)
- d) 연구, 교육, 연수, 대중 및 전문가 대상 홍보, 노하우 및 기술 이전과 같은 활동을 위한 협력 혹은 기여
- e) 주어진 지역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에 대한 유지, 보존, 관리, 공급 혹은 복원
- f) 자금 지원

## 제4조 결과물 출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출판물에는 전통적 지식의 원산지와 제 1조에서 언급한 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 제5조 기간 및 계약 해지

본 계약은 환경에 관한 법률 제 R. 412-22조 제 II항이 정하는 승인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은 사용자가 규정을 하나라도 위반했을 시 환경에 관한 법률 제 D. 412-30조가 정하는 국가 [혹은 과들루프 지방의회/레위니옹 지방의회/마르티니크 지방정부/기아나 지방정부/마요트 도의회 (이들 지역의 의회가 제 L. 412-8조가 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독촉장을 수령통지 요청서를 포함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편물 발송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된다.

### 제6조 원만한 해결 절차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용자와 국가 [혹은 과들루프 지방의회/레위니옹 지방의회/마르티니크 지방정부/기아나 지방정부/마요트 도의회 (이들 지역의 의회가 제 L. 412-8조가 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사용자는 의견 대립의 원인을 밝히는 항의서한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하다면 자신이 요구하는 개선안을 명시한다. 정부 [혹은 과들루프 지방의회/레위니옹 지방의회/마르티니크 지방정부/기아나 지방정부/마요트 도의회 (이들 지역의 의회가 제 L. 412-8조가 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는 항의서한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공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의사표현이 없으면 해당 항의내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7조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관할 재판소

본 계약은 프랑스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본 계약에 대한 해석, 이행 혹은 효력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지역 내 행정 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다.

계약 장소 : ..... 날짜 :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